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9660
결재일자	2015.8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예산담당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정진환	김종호	권용대	이용식	08/11 김병환	
협 조	법제담당 주무관			박기훈 김하연	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-
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확정



기획경제국
(기획예산과)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-
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확정

『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』 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(안)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 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제3항
 -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용

II 추진 절차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계획
 - 기획예산과-7809(2015. 6.30)
- 부패영향 평가 : 개선 권고

- 1) 제2조(위원회 설치 등) : 위원 수를 투명성 있게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
- 2) 제7조(회의) : 회의록 보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: 별도의견 없음
 - 기간 및 방법 : 2015. 7. 9 ~ 2015. 7.29 (20일간), 구보 및 홈페이지
- 아동·성별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- 인권영향 평가 : 안건 상정

III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

제2조(위원회 구성)

원 안	수 정 안
①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	①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

원 안	수 정 안
④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	④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3년간 보존 및 관리 하여야 한다.

IV 조례 제정(안) 주요내용

제1조(목적) : 조례 제정 목적 규정

제2조(위원회 구성) :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및 위원장 선출 방법(호선) 등 규정

-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
-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1/4 초과할 수 없음
-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차례 연임 가능

제3조(위원회 운영) :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규정

-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위원회 심의사항 : 재정공시 내용 적정성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6조(위원회 통합운영) : 위원회 통합운영 사항 규정

- 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시 심의 가능

※ 위원회의 역할이 규정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사항이 아니라 구 재정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적정성 등을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업무를 심사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적정

제7조(회의) : 회의 유형 및 회의록 작성사항 등 규정

- 회의는 정기공시 및 임시회의로 구분
-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후 3년간 보존 관리

제10조(수당 등 지급) : 위촉직 출석위원 수당 규정

-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가능

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: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개정

-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 사항 삭제

VI **향 후 추 진 일 정**
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8.12
- 성북구의회 상정 : 2015. 8.29
- 조례 공포 : 2015. 9월 중

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(안) 1부